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 지원업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등)

그간에는 고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이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나. 고용장려금의 지원업종 선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6항 등)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예) 공공성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제외

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 각 목)

'22.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2.3.4)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42조의2제3호라목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의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을 “신청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등 신청 및 지급”으로 한다.

제1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제외할 대상이나 업종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방법·절차, 신청기간,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제외할 대상이나 업종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31324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 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4조제6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신청”을 “신청 기간 등 신청”으로 한다.

5. 업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대상이나 업종의 경우

제26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청”을 “신청 기간 등 신청”으로 한다.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대상이나 업종의 경우

제28조의4제2항 중 “그 밖”을 “신청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로 한다.

제28조의5제2항 중 “방법·절차 등”을 “방법·절차·기간 등 신청 및 지급”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청 및 지급 등”을 “신청기간 등 신청 및 지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업주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령이 공개 중인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대상이나 업종의 경우

제37조의2제2항 중 “그 밖에 지원”을 “신청기간 등 신청 및 지급”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7제4항제2호의2”로 한다.

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

마.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

하는 사업이나 체인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람
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람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사람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식당으로 배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6.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제142조의2제3호라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의2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 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u>지원금의 신청·지급 방 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다.</u>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신청기간, 지원금의 신청· 지급 방법 등 신청 및 지급</u> ---- ----- --.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 상) ① ~ ④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 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u>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 <u>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의 성 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 금의 지원을 제외할 대상이나 업종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u>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 자 지원요건 등) ①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휴업등에 따른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 자 지원요건 등)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방법·절차,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통령령 제31324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신 설>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 ⑤ (생략)

⑥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 4의2. (생략)

<신 설>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방법·절차, 신청기간,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제외할 대상이나 업종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31324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업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대상이나 업종의 경우

5. (생략)

⑦ 삭제

⑧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②
(생략)

③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

⑦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
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⑧ ----- 신청
기간 등 신청 -----
-----.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대상이나 업종의 경우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신청 기간
등 신청 -----
-----.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
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신청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
-----.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삭제

2.·3.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② -----

방법·절차·기간 등 신청 및 지급-----
-----.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

-----<단서 삭제>

2.·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업주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
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
무비용부담, 육아휴직등의 대상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
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
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
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
시된 공공기관

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
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
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대상이나 업종의 경우

③

개월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
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
다.

④·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
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
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생략)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
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集貨)·수송 과정을 거쳐 배
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신청기간 등 신
청 및 지급-----
-----.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신청기간 등 신청
및 지급-----
-----.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
험자의 범위)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 말한다. 이하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 10. (생략)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같다-----

--

4. ~ 10. (현행과 같음)

1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

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

를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

마. 「도로교통법」 제2조제1

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

를 운송하는 사람

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

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

<신 설>

<신 설>

는 체인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와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람
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람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 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업자와 화물

<신 설>

12. · 1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식자
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
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
송하는 사람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
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
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
한 운수사업자와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
송하거나 식당으로 배송하
는 사람

12. · 13. (현행과 같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
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
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
술자

15.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
상으로 국내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6. 「도로교통법」 제2조제23

<신 설>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발생한 월 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

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② -----

1.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4항제2호의2

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2. (생략) ③·④ (생략)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1.·2. (생략) 3. 부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 다. (생략) 라. 「농지법」에 따른 <u>농지원부</u> 마. ~ 파. (생략) 4. (생략)	-----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농지대장</u> 마. ~ 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